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신홍식 의원 대표발의】



2024. 11. 1.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413호로 2024년 10월 14일 신홍식 의원 외 4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시대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고, 일·가정 양립, 저출산 대책 및 민원공무원 보호 등에 필요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적 요구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근검절약,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공무 외의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현행 제8조, 제12조 및 제16조)
- 나. 남성공무원의 임신배우자 동행휴가, 정·난관 복원 수술 휴가, 민원공무원 보호 휴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4.10.17.~2024.10.22.):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과 저출산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삭제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현행 제8조(근검절약),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6조(공무 외의 국외여행)를 삭제하여 현실적인 복무조례를 시행하고자 함.
- 안 제15조제3항(특별휴가) 중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5조제7항(특별휴가)부터 제15조제9항(특별휴가)까지는 ▲남성공무원의 임신배우자 동행휴가(10일)▲정·난관 복원 수술 휴가(3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공무원 휴가(5일 이내) 부여를 신설함.

○ 검토결과

- 본 안건을 통해 신설하고자 하는 조항의 주요 내용은 ▲ 특별휴가 부여일수¹⁾ 5일→10일 확대 ▲남성공무원 임신검진동행휴가²⁾ 10일 휴가 부여 ▲정·난관 복원 수술³⁾ 3일 휴가 부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

1) 서울특별시 및 타 자치구 특별휴가 부여 일수 현황

5일 이내 부여 (12개 자치단체)	10일 이내 부여 (12개 자치단체)	기타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용산구,	동작구 (8일 이내)

2) 타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남성공무원(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부여 현황

연번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주요내용
1	남 원 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3일
2	남 원 시 의 회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3일
3	부 영 산 광 역 시 회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10일
4	서 울 특 별 시	남성공무원 임신검진동행휴가 10일
5	서 울 특 별 시 의 회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3일
6	안 성 시 의 회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3일
7	안 양 시	남성공무원 임신검진동행휴가 10일
8	안 양 시 의 회	남성공무원 임신검진동행휴가 10일

3) 타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정·난관복원수술 휴가 부여 현황

연번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주요내용
1	강 릉 시	정관복원수술: 3일 난관복원수술: 10일
2	강 릉 시 의 회	정관복원수술: 3일 난관복원수술: 10일
3	철 원 군	정관복원수술: 3일 난관복원수술: 10일
4	철 원 군 의 회	정관복원수술: 3일 난관복원수술: 10일

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공무원⁴⁾ 5일 이내 휴가 부여로 볼 수 있음.

-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여성공무원에 한정하여 임신기간 중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남성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의 임신검진을 위해 병원에 동행할 시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일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공무원의 정·난관 복원 수술 3일 휴가 신설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타 지방자치단체 민원담당공무원 휴가 부여 현황

연번	지방자치단체	주요내용
1	안 산 시	휴식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무원 7일 범위 내 휴가 부여

-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본 일부개정령의 신설 조항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아울러 본 조례안을 통해 신설하고자 하는 특별휴가에 관한 조항은 일하기 즐거운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결과적으로는 구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제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특별휴가의 기간과 횟수를 고려하여 대직하는 직원에게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지 않게 사용함으로써 특별휴가 취지가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5)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 고 자 료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31., 2021. 12. 31., 2024. 7. 2.>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